

# 4단계 BK21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구팀 사업관리 운영 규정

제정 2020.9.1.  
주관부서: 대학원교학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미래기반 창의 인재양성형)의 위임을 받아 4단계 BK21 지원을 받는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이하 “교육연구팀”)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과정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업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4단계 BK21사업(이하 “BK21사업” 이라 한다)”은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우수대학원을 육성하는 4단계 두뇌한국(Brain Korea)21 사업을 말한다.
- ② “사업”은 4단계 BK21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③ “지원”이라 함은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
- ④ “참여대학원생”은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전일제 등록 대학원생을 말한다.
- ⑤ “신진연구인력”은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박사급 전문인력을 말한다.
- ⑥ “참여교수”는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에 적용한다.

제4조(사업 규정의 적용 범위 및 구분) BK21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구팀 대학원생 지원 사업
2. 국제학술 참여 및 협력 사업
3. 대학원생 학술 및 연수 지원 사업
4. 신진연구인력 지원 사업
5. 사업팀 연구 과제 수행지원 사업

제5조(사업기간)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교육부 규정에 따른 과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까지의 총 7년(84개월)으로 정한다. 다만,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관리 운영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 제2장 사업팀 구성 및 운영

제7조(사업팀 구성) ① 본 사업팀은 BK21사업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연구팀장, 운영위원회, 성과확산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계약교수 및 박사후연구원), 대학원생(석·박사 과정)으로 구성된다.

②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육연구팀장,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은 하나의 교육연구팀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③ 교육연구팀에는 교육연구팀 행정을 보조하는 교육조교를 둘 수 있다. 교육조교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하고, 인건비는 대응자금에서 집행한다.<제정 2020.9.1.>

④ 교육연구팀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교육연구팀장은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을 대표하여 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목표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 프로그램 사업 및 교육, 평가, 사업에 책임을 진다.
2. 교육연구팀장은 사업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업 집행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심의,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팀 운영위원회는 이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교육연구팀장은 성과를 수합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확산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업 성과에 대한 내용을 심의 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확산위원회는 매 학기 말에 개최할 수 있다.
4. 교육연구팀장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교육연구팀 내규로 정한다.<신설 2020.9.1.>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능) ①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을 포함한 참여교수 5명으로 구성한다. 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은 사업운영위원회에 있다.

2. 정기점검 회의를 통해 발의된 안건 및 사업팀의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의결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3. 매년 2월과 8월 말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업적 및 사업팀 기여도(프로그램 참여율, 연구 소모임 등 사업 활동 내역)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4.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정 2020.9.1.>

1. 교육연구팀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팀 대학원생과 참여교수의 연구 및 국제 협력과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대학원생 해외 연수자 선발 및 국제 학술대회 참여에 관한 사항
4.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발전 및 국제 교류를 위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국·내외의 우수 학생 유치 및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생 유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과 대학원 과정의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6. 신진연구인력 인사에 관한 사항
7. 사업팀의 사업 계획과 실행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팀의 결과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제9조(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기준)

①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2. 소속이 대학교 학과(학부)와 대학원 학과(학부)가 동일해야 하며, 소속이 다를 경우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 학과(학부)에 전임발령을 받아야 한다.

② 참여교수가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또는 연구년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의 총장이 참여교수가 연구년 기간 중 해당 기간 동안 대학원생의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수의 사업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연구년 기간 중 BK21사업 참여 신청서(연구년직무대행보고서 인정)를 제출해야 한다.

③ 참여교수 선발 및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교체 및 증원 시, ‘BK21사업 공고상의 참여교수 자격요건 기준’

- 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연구팀장이 결정한다.
2. 변경이나 추가 대상 참여교수에 대하여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교수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기존 참여교수들과의 경쟁력 등을 비교 평가하여 선정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팀의 참여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3.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해당 참여교수는 BK21사업 공고사항의 참여교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와 교육연구팀장이 변경 및 추가 대상 참여교수에 대한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기존 참여교수들과의 경쟁력을 비교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다.
  4. 대학 및 교육연구팀이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교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5. 참여교수 변경으로 인해 신규 참여한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은 사업에 참여한 시점부터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제10조(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 ① 참여대학원생은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대학원에 전일제로 입학하여 석사 2년, 박사 4년, 석·박사 통합과정 6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으로 선정한다.<제정 2020.9.1.>
- ②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의 장학금 지급은 차등으로 지원하며, 평가를 거쳐 석사과정생은 학기별 420만원, 박사과정생은 학기별 780만원, 박사수료생은 학기별 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학원생은 매 학기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다만, 최초 사업팀 계획서에 준하여 인원을 선발하되 필요에 따라 감원과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석사과정 지원대학원생은 사업팀에서 진행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 지원대학원생(장학금수혜자)은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원생을 학기별로 배정한다.
- ⑥ 연간 우수대학원생은 [별표3]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 ⑦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사업팀의 장이 요구할 경우 모든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⑧ 참여대학원생은 사업기간 동안 전일제 여부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해야 하며,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 가입 여부(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와 ‘전일제 대학원생 확인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⑨ 석사과정 지원대학원생은 사업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⑩ 박사과정 지원대학원생은 사업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1년에 2편 이상의 KCI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연구 성과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단, 일반 학술지의 게재는 성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연구는 2인 이내인 경우만 인정한다.
- ⑪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 ① 교육연구팀의 장은 본 사업을 위하여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기준 등을 준용하여 계약교수와 박사후연구원(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 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2. 박사후연구원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4단계 BK21사업의 기준 요건에 의거하여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단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연구원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

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 분야가 사업팀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신진연구인력은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소속 사업팀에서 전일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박사후연구원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팀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 학기당 주 6시간 6학점 이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팀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 학기당 주 6시간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를 할 수 있다.
5. 계약교수 및 박사후연구원의 교내 강의에 대하여는 사업팀 내 교육·연구 수행에 맞는 적절한 시수와 별도 강의로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사업 진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7. 신진연구인력은 채용 후 각 1년마다 최소 300%(KCI 등재 및 등재 후보 논문은 단독 저작 기준 편당 각 100%, SCI, SCIE, SSCI, A&HCI는 편당 300%, SCOPUS는 180%) 이상의 연구 업적을 산출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T/O 발생 1개월 전에 사업팀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진연구인력 후보자 중에 연구 실적이 우수한 후보를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9.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년마다 갱신하되 사업 진행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대학원 졸업 규정) 사업팀의 참여 및 지원 대학원 학생은 대학원 졸업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 가. 외국어 시험은 영어시험으로 응시할 수 있다.
- 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석사	박사
영어 시험	- 60점 이상 합격 - 영어시험 대체 가능 (토익 650점, 토플 CBT 190점, 토플 PBT 520점, 텡스 533점, IBT 68점 이상의 성적표)	

- 다. 전공 종합 시험 과목은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서 신청해야 한다.
- 라. 과목 출제 방식은 공통교과목, 분과 전공과목, BK21사업 교과목 공통과목으로 출제한다.

2. 학위청구논문심사

- 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예비발표회를 통하여 논문에 대한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나. 예비발표회는 논문 발표자, 지정 토론자, 대학원생, 논문지도위원회, 지도교수, 대학원 주임교수 등이 참석한다. 논문지도위원회는 석사 3인, 박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통해 예비발표를 통과한 자에 한해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갖는다.
- 다. 박사학위 논문제출은 KCI 등재(후보)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지도교수로부터 논문 제출을 허락받은 자여야 한다.

제13조(연구윤리 확립) 사업팀은 연구윤리 활동의 활성화와 공정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등 사업 관련자에 적용한다.<제정 2020.9.1.>

- ① 연구윤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팀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 ④ 제보자가 있는 경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원을 보호한다.
- ⑤ 연구윤리위의 심의 결과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관리 기관에 보고한 후 참여교수, 신진연구

인력,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의 위조 및 변조, 도용한 행위
2. 자기표절 및 타인의 연구를 표절한 행위(카피킬러 및 자체 표절 방지 프로그램 검사 시 인용문 제외 표절을 15% 이상)
3. 부당하게 저자 표시를 한 행위
4.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간의 부당한 연구 거래, 연구비 부정 집행, 아이디어 도용 및 사업과 무관한 부당한 요구 및 인사 불이익의 행위
5. 그 밖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제3장 사업비 관리

#### 제14조(사업비의 정의)

① 사업비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급된 BK21사업 운영비와 학교에서부터 지급하는 대응 자금을 의미한다.

② 사업비는 국고지원금의 지출 항목 및 항목별 예산편성의 훈령, 지침에서 정한 항목 및 기준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맞는 적절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한다.

1.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 가. 석사 월 70만원
  - 나. 박사 월 130만원 지급
  - 다. 박사수료 월 100만원 지급
2. 인건비
  - 가. 박사후 연구원 월 300만원
  - 나. 계약교수 월 300만원
3. 국제화경비 :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 해외 장·단기 연수 경비
4. 사업팀 운영비 : 학술활동 지원비, 일반 수용비, 회의 및 행사 개최비
5. 교육과정 개발비 : 정보 수집비, 교재 개발비, 사례 조사비, 외부 전문가 활용비
6. 간접비 : 산학협력단에서 5% 이내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 제15조(연구비 중앙관리 및 사업팀 운영)

① 본 사업팀의 사업비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통합 관리한다.

② 사업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세부 예산은 연구재단에 제출한 사업비 집행 규정 내역과 대학 본부에서 지원하는 대응자금의 “예산 지원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사업비의 구분 및 변경) BK21사업 사업비 지출항목은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국제협력경비, 사업단 운영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사업팀의 참여 대학원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 지급한다.
2. 신진연구인력의 지원비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353호 2020.11.27.) 및 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020.12.24.)」에 따라 편성하되,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3. 교육과정 개발비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비, 교재 개발비, 사례조사비, 외부 전문가 활용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4. 국제협력경비는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 해외 장·단기 연수경비,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로 한다.
5. 사업팀 운영비는 학술활동 지원비, 일반 수용비, 회의 및 행사 개최비, 기타로 나누

어 집행한다.

6. 간접비는 사업팀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산학협력단에서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7. 사업비 항목 내 또는 항목 간의 사업비 예산변경은 훈령·지침에서 정한 항목별 최소 및 최대 지원의 비율을 준수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의 승인에 따라 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성과급은 증액할 수 없으며 성과급 평가 항목은 참여교수의 경우 [별표 2]를,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별표 3]을,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별표 5]에 따른다.

#### 제4장 사업비 집행

제17조(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신진연구인력은 연구활성화를 위해 사업팀 소속으로 고용된 인력으로 지원 내역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과 「선문대학교 연구전담 교원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0.9.1.>
2. 신진연구인력 1인당 지원 기준은 산학협력단 인건비 지급 시점(매월 24일)에 박사후 연구원 300만원, 계약교수 300만원을 지급(4대 보험,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 퇴직금 포함)한다.

제18조(교육과정 개발비) 교육과정 개발비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비, 교재 개발비, 사례조사비, 외부 전문가 활용비 등으로 집행 가능하며, 지급 항목별 집행 기준은 국고지원금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과 대응자금(교비)의 경우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령집에 따른다.<개정 2020.9.1.>

- ① <삭제 2018.3.1.>
- ② <삭제 2018.3.1.>

제19조(국제협력지원비) 대학원 국제화 프로그램의 사업내용과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역량 강화 운영비는 BK21사업의 운영 성과를 위하여 운영되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운영비, 해외석학 초빙 강좌 운영비, SCI급(SSCI, A&HCI, SCOPUS 포함) 학술지 등재논문 지원비,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비를 경비로 사용한다.
2.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BK21사업의 운영 원칙에 준해야 하며, 사업비 규정(선문대학교 여비 규정 및 한국연구재단 여비 규정)에 준해야 한다. 대학원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국제학술대회참가 및 운영)은 연 2회 이내의 참가를 지원하며 집행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4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발표
  - 나. 10인 이상의 구두발표(실제 참여자 기준)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사업팀” 명칭이 학술대회의 지원, 참여, 주최, 발표자 소속 등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구두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국내 소속기관 내국인 40%,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단, 국내 개최 시에는 외국인이 1/3이상)이어야 한다.
3. BK21사업팀은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단기 해외연수를 사업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가. 장·단기 해외연수는 BK21사업팀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한다. 해외 기관으로의 장기 연수 지원은 교육부 훈령과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선문대학교 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지원규모를 산출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 나.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대상은 사업팀 소속의 참여대학원생으로 석사과정생의 경우 사업팀 사업 관련 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박사과정생의 경우 KCI급 논문 실적(70%), 학술대회 발표 실적(20%), 사업팀 관련 강연

- 회나 세미나, 학술대회 참여 실적(10%)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 다. 해외연수 지원자는 선발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 라. 지원 금액은 항공비 실비와 체재비(실비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 마. 해외연수생은 사업단의 우수인력양성 목적에 따른 세부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연수 종료 이후 일주일 이내에 연구 결과물을 사업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참여교수는 단독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참여교수 및 지원대학원생에게는 실제 학술대회의 운영 날짜에 맞추어서만 참여비가 지급되며, 기타 추가되는 경비는 자비로 부담한다.
  6.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이 단독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BK21사업 규정에 맞추어 심사한 후 참여비의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사업팀의 아젠다와 소속이 일치하지 않으면 참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7. 참여교수가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더라도 단독 발표거나 개인적인 연구 성과 발표의 경우 참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8. 연 2회를 초과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 참가 및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연구 성과를 위하여 미리 계획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활용 범위 안에서 지급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 후 지원 및 지급을 결정한다. 동일 학생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하여 참가 제경비를 지원한다.
  9. BK21사업 사업비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국제학술대회의 간접 지원이나 개별 지원을 할 수 없다.
  10. 국제학술대회 참가 전 [국제학술대회 참가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제출하고, 학회 참가 후 1개월 이내에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연도별 사업 기간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2.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경비 신청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BK21사업 단기 해외연수 경비 신청서
    - 나. 학회관련자료(국제학술대회 증빙 관련 자료, 초록집 표지 및 초록집 사본)
    - 다. 등록비 영수증 원본
    - 라. 체재비 영수증 사본(항공권 : 실비기준, 체재비 : 대학 여비 기준)
    - 마. 여권사본(입출국 기재면 표시)
  13.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의 경우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20조(해외석학초빙 강좌 운영비) ① 당해 연도 해외석학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3개월 전에 사업단에 석학 초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팀장은 초청 석학의 연구 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해외석학이라 함은 국제적 명성을 갖춘 교수 혹은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를 의미한다.

② 해외석학의 초빙 강좌 운영비는 4단계 BK21 사업팀 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비 운영계획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숙박비, 자문료([별표4]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법령집 강사료, 자문료 기준에 준함), 회의비를 포함한 1인당 1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업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 사업비의 운영 내에서 지급한다.

④ 해외석학은 반드시 사업팀 아젠다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초빙할 수 있다.

제21조(참여교수 성과급) ①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경비 산정은 참여교수의 연구업적과 사업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간 2인,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② 평가기준은 교수업적 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반영비율은 [별표2]에 따른다.

③ 개인별 지급액은 평가항목과 반영비율에 따라서, 1인당 최대 한도액은 200만원 이내 사업비 내에서 그 범위와 기준을 정한다.

제22조(신진연구인력 성과급) ①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성과급 경비는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업적과 사업팀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연간 2인 이내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기준은 참여교수 성과급 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세부 평가항목과 반영비율은 [별표5]에 따른다.

③ 개인별 지급액은 평가항목과 반영비율에 따르며, 1인당 최대 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사업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④ 연간 재원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참여대학원생 성과급) ①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 경비는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과 사업팀 관련 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 참여 실적 등을 산정한 기여도로 평가하여 연간 2인(박사1, 석사1 / 총 200만원) 이내,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②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생 : 논문 실적 점수, 학술대회 발표 점수, 사업팀 프로그램 참여율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2. 박사과정생 : 논문 실적 점수, 학술대회 발표 점수, 사업팀 프로그램 참여율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개인별 지급액은 평가항목과 반영비율에 따르며, 1인당 최대 한도액은 100만원 이내로 사업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④ 연간 재원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기타사업운영 지원비)

① 논문 게재료는 참여교수 5인과 신진연구 2인에 한하여 각 30만원씩 지원하며, 연 1회 이상 초과 지원 여부는 연간 전체 사업비 내에서 교육연구팀장이 단력적으로 운영한다.

② 사업비 지출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에 이체하는 형태로 집행한다.

③ 학술활동 지원비는 국내학회 참가비의 경우 참여교수 5명에 한하여 연 1회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④ 국내 여비는 참여교원 7명(참여교수 5명, 신진연구 인력 2명)에 1인당 각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집행은 대학 자체 여비 규정에 따라서 연 1회 지원한다.

⑤ 일반수용비, 회의비 및 행사 개최비, 기타 비용은 BK21사업의 운영 원칙에 따라야 하며, 사업비 규정(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령집)을 준용한다.

제25조(기타 세부 사항)

① 본 교육연구팀의 대학원생지원 규정, 대학원생 연수에 관한 규정, 신진연구인력 성과급지원 규정 등 사업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사업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사업팀자체평가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사업팀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팀장을 포함한 참여교수 5명, 신진연구인력 2명으로 구성한다.

2. 매년 2월과 8월 학기별로 사업팀 현황 및 참여대학원생 현황, 교육역량 영역, 연구역량 영역 지표를 통해 사업 자체 평가 및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교육연구팀 성과확산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교육연구팀은 매 학기 말에 해당 사업 수행 기간 동안의 연구 및 교육, 산학성과를 발표회를 통하여 공개하고 공유한다.

2. 교육연구팀은 매 해 말에 해당 사업 수행 기간 동안의 연구 및 교육, 산학성과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발표하고 공유한다.

제26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참여 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 장학금을 신청하고 [별표 1]에서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정한다.



- ② 석사과정생은 학기별 420만원, 박사과정생은 학기별 780만원, 박사수료생은 학기별 6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한다.
- ③ 지원대학원생은 박사수료 후 4학기까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 ④ 장학금 지급은 산학협력단 인건비 지급 시점(매월 24일)에 장학금으로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다.
- ⑤ 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일제 대학원생 확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2. BK21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 3.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서
  - 4.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 5. 재학(수료)증명서 및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제27조(학술활동 지원비)

- ① 사업팀의 참여교수 및 지원대학원생이 KCI급 국내학술지,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 경우 심사료, 게재료, 번역료(국제학술지)를 사업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게재비가 사업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을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학술대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는 매 년 2회 개최 및 참여한다.
  - 2.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사업팀의 예산안 세부 규정에 따르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③ 학술활동 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원 기준: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이 국내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 발표 시 지원한다.
  - 2. 지원액: 「선문대학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3.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은 연도별 사업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학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 또는 국제 학술대회 참가 신청서
  - 2. 학회관련자료(초록집 표지 및 초록 사본)
  - 3. 등록비 영수증 사본
  - 4. 왕복교통비 영수증

부칙<2020.9.1>

- 제1조(시행일 및 효력) 본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전에 수행 및 처리된 사업팀의 업무는 이 내규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 ② 제9조 박사학위 최저학점은 2017학년도부터 36학점(논문연구 6학점 포함), 석·박사 통합과정은 66학점(논문연구 6학점 포함)으로 적용한다.

[별표 1] 대학원생 평가기준

대학원생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기간
학부성적 (석사 1학기)	-학부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 (전 학기 평균률 및 백분율 기준) -편입생의 경우 편입 이전 학부성적 포함		학부 전과정 성적
대학원 직전학기 (석사 : 2-4학기) (박사 : 석사 전학기)	-대학원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 (전 학기 평균률 및 백분율 기준)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 전학기 성적 50점 만점 환산 (평균률 및 백분율 기준)		직전학기
외국어	-한문,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 택 1 결과 제출 (만점 기준 50% 이상)		최근 2년
논문실적 (최대 100점)	1) KCI 논문	한 건당 100점	최근 1년
	2) KCI 우수등재지 논문	한 건당 150점	최근 1년
	3) 국제학술지 A (A&HCI, SCI, SCIE, SSCI)	한 건당 300점	최근 2년
	추가 사항 4) 국제학술지 B SCOPUS	한 건당 180점	최근 2년
	5) 국내논문(KCI 이외)	한 건당 70점	최근 1년
학술발표 (최대 100점)	1) 국외	20점	직전학기
	2) 국내	15점	
논문 및 학술발표 반영비율 (최대 100점)	학생이 1저자인 경우		첫 번째 저자 100% 두 번째 저자 70% 세 번째 저자 30% 네 번째 저자 이하 10%
	학생이 1저자가 아닌 경우		첫 번째 학생 저자 50% 두 번째 학생 저자 40% 세 번째 학생 저자 30% 네 번째 학생 저자 20%

[별표 2] 참여교수 평가지표  
 <제정 2020.9.1.>

평가 지표는 ‘4단계 BK21사업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의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사업팀 참여교수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사업팀 단계별 평가 시 목표달성을 위한 참여조건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학문풍토를 이루기 위한 연구 의욕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참여교수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기간
논문실적 (80점)	-KCI급 및 등재후보 논문	편당 100%	최근 1년
	-KCI 우수 등재지 논문	편당 150%	최근 1년
	-SCI, SCIE, SSCI, A&HCI	편당 300%	최근 1년
	-SCOPUS	편당 180%	최근 1년
논문 반영비율	제 1저자 및 교신저자 100% 공동저자 50%		최근 1년
SCI 논문 가산점 (SSCI, SCIE, A&HCI 포함)	JCR IF 기준 1) 분야별 SCI 논문 중 상위 10%(편당 가산점 100%) 2) 분야별 SCI 논문 중 상위 20%(편당 가산점 50%) 3) 분야별 SCI 논문 중 상위 30%(편당 가산점 30%)		-
참여교수 연구비실적 (30점)	연구비수주 실적 (공동연구자가 포함될 경우 연구비 배분 기준)		최근 1년
참여대학원생 실적 (30점)	지도학생 장학금 지급 인원 수		최근 1년
기여도 평가 (60점)	교육연구팀장의 평가 총점 중 30% 반영 - 당해 연도 교육 및 사업단에 대한 봉사	(1인) 최대 200만원 지급	최근 1년
총점	200점		

- \* 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 \* 참여교수는 논문 등재 시 해당 논문 별쇄본 1부를 사업팀에 제출한다.
- \*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표 3] 우수대학원생 선발 기준  
 <제정 2020.9.1.>

우수대학원생 선발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점수	비고
논문 실적 점수 (환산편수)	국내 일반 학술지	10	
	KCI 등재 후보 학술지	60	
	KCI 등재 학술지	60	
	KCI 우수 등재 학술지	80	
	국제 전문 학술지 (A&HCI, SCOPUS 혹은 동급)	100	
학술대회 발표 실적 점수	국내 학술대회 발표 실적	50	
	국제 학술대회 발표 실적	50	
사업팀 프로그램 참여율	프로그램별 참여 점수 부여	100	총점 (100점 만점)
<b>총점 (실적 결과 점수)</b>			

- \* 우수대학원생 선발을 위한 기준으로 각 항의 항목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 \*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하고, 우수대학원생 업적 산출 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비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 우수대학원생 선발 기준에 따른 우수 참여대학원생 실적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다.

[별표 4] 산학협력단의 법령집 강사료, 자문료 기준  
 <개정 2018.3.1.>

제20조에 따른 해외석학 초빙 자문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자격구분

구분	지급 기준	자격기준		
		기준1	교육·연구·산업경력(기준2)	교육·연구·산업경력(기준3)
국내·외 (원/회)	A급	교수, 수석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
	B급	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그와 상응하는 경력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또는 그와 상응하는 경력
	C급	조교수, 선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그와 상응하는 경력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또는 그와 상응하는 경력

자문료

구분	직급	장기자문료(일 기본급)	단기자문료(시간기본급)	비고
국내	A급	300,000/일 이하	150,000/시간 이하	제세포함
	B급	250,000/일 이하	100,000/시간 이하	
	C급	200,000/일 이하	100,000/시간 이하	
국외	A급	\$6,000/월 이하	\$700/월 이하	
	B급	\$4,000/월 이하	\$400/월 이하	
	C급	\$2,000/월 이하	\$400/월 이하	

- 장기자문 : 국내 / 2일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2회 이상의 자문  
 국외 / 1개월 이상의 장기 활용
- 단기자문 : 국내 / 1일 이내 1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문  
 국외 / 1개월 미만의 단기 활용

강연료

구분	직급	강연료	비고
국내	A급	50만원/회 이하	제세포함
	B급		
	C급		
국외	A급	(1,500 \$/회) 이하	
	B급	(1,000 \$/회) 이하	

- 국내 : 강연목적 초청일 경우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단기자문일 경우 최고 장기 자문료 일 기본급을 초과할 수 없다.
- 국외
  1. 자문료 및 강연료의 지급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교원비자(E-1) 혹은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며, 관광 비자를 발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다.(출입국 관리법 제18조 3항)
  2. 강연목적이 초청일 경우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단기자문일 경우 최고 장기 자문료 월 기본급을 초과할 수 없다.
  3. 식비, 숙박비 등 체제비는 본교 여비규정에 따라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항공료는 항공사 Invoice를 첨부하고 비행기표 제출 후 실비 지급한다.
  4. Working Day를 기준으로 하되, 미화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로 지급한다.

[별표 5] 신진연구인력 평가지표  
 <신설 2018.3.1.>

평가 지표는 ‘4단계 BK21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팀의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사업팀 신진연구인력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사업팀 단계별 평가 시 목표달성을 위한 참여조건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학문풍토를 이루기 위한 연구 의욕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신진연구인력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기간
논문실적 (80점)	-KCI급 및 등재후보 논문	편당 100%	최근 1년
	-KCI 우수 등재지 논문	편당 150%	최근 1년
	-SCI, SCIE, SSCI, A&HCI	편당 300%	최근 1년
	-SCOPUS	편당 180%	최근 1년
논문 반영비율	제 1저자 및 교신저자 100% 공동저자 50%		최근 1년
SCI 논문 가산점 (SSCI, SCIE, A&HCI 포함)	JCR IF 기준 1) 분야별 SCI 논문 중 상위 10%(편당 가산점 100%) 2) 분야별 SCI 논문 중 상위 20%(편당 가산점 50%) 3) 분야별 SCI 논문 중 상위 30%(편당 가산점 30%)		-
참여교수 연구비실적 (30점)	연구비수주 실적 (공동연구자가 포함될 경우 연구비 배분 기준)		최근 1년
참여대학원생 실적 (30점)	지도학생 장학금 지급 인원 수		최근 1년
기여도 평가 (60점)	사업팀장의 평가 총점 중 30% 반영 - 당해 연도 교육 및 사업단에 대한 봉사	(1인) 최대 200만원 지급	최근 1년
총점	200점		

- \* 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 \* 신진연구인력은 논문 등재 시 해당 논문 별쇄본 1부를 사업팀에 제출한다.
- \*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